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2. 27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55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2. 2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4-3	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55	미부여	2009-07-06	학익동, 옥련동 일원의 옛이름에서 유래하여 제명	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0-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1- 15	미부여	2009-07-09	옥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90m지점에서 왼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81-1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03	미부여	2009-07-10	고구려의 시조 고몽주의 이들인 비류가 남하해서 세운 나라에서 유래	
4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-5	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3	미부여	2009-07-06	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 임을 반영하여 제명	
5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46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97번길 19- 1	미부여	2009-07-09	옥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70m지점에서 왼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48	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35	미부여	2009-07-09	독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 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2. 27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41 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별 도 열 략				

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2. 2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	변경전	변경후				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48, 146-1, 155-1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46-1	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41	지번호류로 인한 지번변경	2009-07-09	독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2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-9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-3, 911-9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715	지번호류로 인한 지번변경	2009-07-06	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이름에서 도로명 부여
3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88-1, 288-4, 288-18, 293-1, 293-2, 293-3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88-1, 288-4, 288-15, 288-16, 288-18, 288-40, 290, 291, 292, 293-2, 293-3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81	지번호류로 인한 지번변경	2009-07-10	고구려의 시조 고몽주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해서 세운 나라에서 유래
4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8-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8-1, 18-2	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인선길94번길 37-1	지번호류로 인한 지번변경	2011-01-31	수인선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-152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공사완료 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【문화시설(박물관)】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2. 2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사업 시행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-22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문화시설 (박물관)
 - 【명칭】 가천문화재단 문화시설 조성사업
3. 사업의 규모 : 2,390㎡(건축면적:475.31㎡, 연면적:2,447.19㎡)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(재)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길여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1번지
5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: 2009.01.12. ~ 2012.02.07.

도시관리계획(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(안)

도시관리계획(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12. 02. 21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 내용

○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변 경			
가구 번호	위치	면적	비고	가구 번호	위치	면적	비고
54	6	127.4		54	6	127.4	7와 공동개발 (권장)
	7	176.7			7	176.7	6와 공동개발 (권장)

○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변 경					
도면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	도면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		
54	54 (6,7)	용 도	지정용도	-	54	54 (6,7)	용 도	지정용도	변경없음
			권장용도	별표1의 C 권장용도				권장용도	변경없음
			불허용도	별표1의 C 불허용도				불허용도	변경없음 (단,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)

주) ()는 획지번호임

○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역명	위치	변경사유
청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	인천 연수구 청학동 566-12번지, 566-13번 지	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 대지와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 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열람기간

-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(☎ 032-810-7467, FAX 032-810-7469)

4. 관계도서 및 도면

- 별첨 (계재생략)

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
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 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2. 2. 22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2. 공 고 기 간 : 2012. 2. 22. ~ 2012. 3. 21.(1개월간)
3. 송달 대상업체

등록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비고
인천연수구09-0004	이인솔루션대부중개	정해욱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33-3번지 101호	
인천연수구10-0021	제일캐피탈대부중개	최지철	인천광역시 연수동 488-4번지 201호	

4. 송달내용

- 가.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사무소 소재불명, 연락불가로 소재 확인을 공고를 하오니,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가 없을 경우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**대부(중개)업 등록이 취소됨**을 알려드리며, **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(중개)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(중개)업 등록이 제한됩니다.**
(같은 법 제4조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지역경제과(☎032-810-73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- 1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통·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연수구 통·반장설치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2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

1. 개정이유

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, 3회 연임할 수 있으므로 평가순위 하위 10%는 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다만,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평가순위 하위 10%는 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 →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처

- 주소 : (우 406-723)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(동춘동923-5)
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
- 전화번호 : 032)810-5325 (FAX 810-5319)

4. 붙임 : 『인천광역시연수구 통·반장설치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1368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②제3호 중 “다만,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
평가순위 하위 10%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3.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</u> <u>되 평가순위 하위 10%는 재위촉 대상</u> <u>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)</p> <p>①(생략)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생략)(현행과 같음)</p> <p>1.(생략)(현행과 같음)</p> <p>2.(생략)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u>(삭제)</u></p> <hr/> <hr/> <hr/>